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717-2021-004553

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-21 빌드윈르헤브3차아파트 제9층 제902호

| 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|
| 표시번호 | 접 수 | 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 | 건 물 내 역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
| 1 | 2021년7월30일 |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-21 빌드윈르헤브3차아파트 [도로명주소]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41번길 42 |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4층 공동주택(아파트) 1층 128.1152㎡ 2층 669.248㎡ 3층 669.248㎡ 4층 669.248㎡ 5층 669.248㎡ 6층 669.248㎡ 7층 669.248㎡ 8층 669.248㎡ 9층 669.248㎡ 10층 626.9556㎡ 11층 626.9556㎡ 12층 626.9556㎡ 13층 626.9556㎡ 14층 626.9556㎡ | |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| 표시번호 | 소 재 지 번 | 지 목 | 면 적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| 1.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-21 | 대 | 4268.9㎡ | 2021년7월30일 등기 |

| 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표시번호 | 접 수 | 건 물 번 호 | 건 물 내 역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
| 1 | 2021년7월30일 | 제9층 제902호 | 철근콘크리트구조 66.8358㎡ | |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-21 빌드윅르헤브3차아파트 제9층 제902호

| (대지권의 표시)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표시번호 | 대지권종류 | 대지권비율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
| 1 | 1 소유권대지권 | 4268.9분의 41.1803 | 2021년7월30일 대지권 2021년7월30일 등기 |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 | 등기원인 | 권리자 및 기타사항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 | 소유권보존 | 2021년7월30일 제57240호 | | 소유자 주식회사무궁화신탁 110111-28674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 |
| | 신탁 | | | 신탁원부 제2021-1461호 |
| 2 | 소유권이전 | 2021년7월30일 제57241호 | 2021년7월30일 신탁재산의귀속 | 소유자 주식회사빌드윅주택 171711-01180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8번길 28, 101호(장성동,빌드윅르헤브) |
| | 1번신탁등기말소 | | 신탁재산의 귀속 | |
| 3 | 소유권이전 | 2021년7월30일 제57243호 | 2021년7월30일 신탁 | 수탁자 주식회사무궁화신탁 110111-28674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 |
| | 신탁 | | | 신탁원부 제2021-1588호 |
| 3-1 | 금지사항등기 | 2021년8월30일 제63880호 | 2021년8월30일 임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| 이 건물은 주택법 제61조에 따라 임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임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|
| 4 | 3-1번금지사항등기 말소 | | | 미분양으로 인하여 2022년2월15일 등기 |
| 5 | 소유권이전 | 2022년2월15일 제9729호 | 2022년2월15일 신탁재산의귀속 | 소유자 주식회사빌드윅주택 171711-01180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8번길 |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-21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제9층 제902호
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 | 등기원인 | 권리자 및 기타사항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| | 28,101호(장성동, 빌드원르헤브) |
| | 3번신탁등기말소 | | 신탁재산의귀속 | |
| 6 | 강제경매개시결정 | 2024년9월23일 제60250호 | 2024년9월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(2024타경35778) |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-0003123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(영남관리센터) |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 | 등기원인 | 권리자 및 기타사항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1 | 주택임차권 | 2024년3월4일 제12752호 | 2024년3월4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 (2024가임74) | 임차보증금 금230,000,000원 범 위 제9층 제902호 66.8358㎡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1월28일 주민등록일자 2022년2월15일 점유개시일자 2022년2월28일 확정일자 2022년2월15일 임차권자 김진태 611107-*****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41번길 42, 902호 (용흥동,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) |
| 1-1 | | | | 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4년3월4일 부기 |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5년10월15일 23시48분20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717-2021-004553

[집합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-21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제9층 제902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| 등기명의인 | (주민)등록번호 | 최종지분 | 주 소 | 순위번호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|
| 주식회사빌드원 주택 (소유자) | 171711-0118074 | 단독소유 |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8번길 28,101호(장성동, 빌드원르헤브) | 5 |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정보 | 주요등기사항 | 대상소유자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6 | 강제경매개시결정 | 2024년9월23일 제60250호 |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| 주식회사빌드원주택 |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정보 | 주요등기사항 | 대상소유자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임차권설정 | 2024년3월4일 제12752호 | 임차보증금 금230,000,000원 임차권자 김진태 | 주식회사빌드원주택 |

[참고 사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